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577호

나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

다. 제안일자 : 2019년 3월 29일

라. 회부일자 : 2019년 4월 3일

## 2. 제안이유

개정안은 2019.1.1.字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부서명칭을 반영하고,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중 “심신장애”라는 표현이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개정하며, 지방보조사업자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(“제로페이”)을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가.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간사를 “재정관리담당관”에서 “재정균형발전담당관”으로 변경함(안 제10조제5항).

나.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중 “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”를 “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”로 변경함(안 제14조제1호).

다. 지방보조금 집행방법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추가함(안 제26조제2항)

## 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○ 개정안은 조직개편(2019.1.1)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을 반영하고, ‘장애’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변경하고,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해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음.

### 나.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 명칭의 반영(안 제10조제5항)

○ 안 제10조제5항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간사를 “재정관리담당관”에서

“재정균형발전담당관”으로 변경하고 있음.

○ 이는 서울시 조직개편(2019.1.1)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부서의 명칭과 기능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임.

○ 다만 조직개편과 연관된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지 않고 시차를 두어 담당부서 명칭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하기 어려움.

**다. ‘장애’ 해촉사유의 개선(안 제14조제1호)**

○ 안 제14조제1호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중 “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”를 “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”로 변경하고 있음.

○ 이는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[1]과 유엔의 “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[2](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)”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임.

○ 정부는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을 개정(2016.2.3.)하면서 인권위원의

---

1)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(차별금지)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) “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” 제29조(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) 나.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, 다음을 포함한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할 것
① 국가의 공적·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비정부단체와 정당 활동 및 운영에의 참여
② 국제적, 국내적, 지역적 및 지방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의 결성과 가입

퇴직이 가능한 요건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한 바 있음[3].

○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역시 '장애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〔참고자료1〕.

○ 장애의 유무를 일상적인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연계해 판단하는 것은 자칫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.

**라. 지방보조금 집행방법에 제로페이 추가(안 제26조제2항)**

○ 현재 지방보조금은 보조금관리통장과 연결된 결재전용카드(체크카드)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예외적으로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계좌입금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음.

○ 안 제26조제2항은 지방보조금 집행방법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이하 "제로페이")을 추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.

○ 소상공인의 과도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출발한 제로페이를 지방보조금 사업에 적극적으로

---

3) 인권위원이 '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'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체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의결로 퇴직할 수 있다는 제8조가 신체적·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인권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해석될 수 있어 개정안과 같이 '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'로 개정하였음.

활용함으로써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○ 그러나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, 계좌이체가 2,365억 6천 3백만 원으로 총액의 85.8%를 차지하고 있고, 체크카드는 316억 3천 4백만 원으로 보조적 수단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.

〈2018년 서울특별시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집행 현황〉

(단위: 백만 원)

| 구 분 | 집행 금액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소계 | 카드 | 계좌이체 | 기타 |
| 총 계 | 275,820<br>(100%) | 31,634<br>(11.5%) | 236,563<br>(85.8%) | 7,623<br>(2.7%) |
| 시 | 193,951<br>(100%) | 13,710<br>(7.1%) | 174,047<br>(89.7%) | 6,194<br>(3.2%) |
| 자치구 | 81,869<br>(100%) | 17,924<br>(21.9%) | 62,516<br>(76.3%) | 1,429<br>(1.8%) |

※ 주 : 국고보조와 사후 정산형·급여형을 제외한 전액 시비보조사업 집행 현황임.

○ 이처럼 계좌이체가 대다수인 지방보조금 집행에 제로페이 이용을 강제화하는 것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경감이란 정책적 목표 달성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정책적 판단이 요구됨.

○ 한편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, 출자·출연 기관, 민간단체 등의 제로페이 이용을 위해 「제로페이Biz」[4]시스템을 구축하여, 2019년 4월 15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음.

4) 법인용 제로페이

○ 이들 기관·단체들이 「제로페이Biz」를 통해 제로페이를 이용하려면, 금융결재원을 통한 가맹점 통보, 집계·정산 등을 갖춘 '제로페이 플랫폼' 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됨.

○ 그러나 플랫폼 사용승인권자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시가 구축한 「제로페이Biz」 시스템이 결재와 동시에 출금이 이뤄지지 않아 '직불전자지급수단'[5]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이유로 플랫폼 사용을 불허한 바 있음(2019.3.19.).

○ 현재까지도 금융위원회는 결재일(당일) 24시까지 출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「제로페이Biz」를 '직불전자지급수단'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바, 지출결의서 작성, 결제, 지출 등이 당일 24시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「제로페이Biz」를 철저히 운영해야 할 것임.

-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에 한하여 「제로페이Biz」 이용허가를 받았다고는[6] 하나 현재까지 확인된 공문은 없음.

| 담당 조사관 | 연락처 |
|---|---|
| 최범준 | 2180-8058 |

5)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(정의) 13. "직불전자지급수단"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(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)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.

6) 서울시는 금융결제원의 e-mail 통보를 근거로 하였다고 밝혔으나 금융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공문은 없음.

〔참고자료1〕

# 시 일부 조례의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

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포함한 모든 서울특별시 조례의 개정을 권고합니다.

서울시 조례 중 '장애'가 '직무수행'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 및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 '장애'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□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(이하 '서울시 인권위원회')는 2017년 '자치법규 인권관련 실태조사'를 제안하여 추진된 바 있습니다. 실태조사의 목적은 시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서울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인권친화적인 자치법규 제·개정으로의 유도를 통해 시민 인권을 제고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 결과 서울시 조례 중 '장애를 이유로 한 위원 위촉 해제 사유' 조례 조항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**예시 〈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〉**

제16조 해촉

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
2. **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**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□ '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'라는 문구는 '장애'가 '직무수행'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일반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는 만큼 '장애'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□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는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,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생활에 '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'을 적극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보고서 최종견해는 '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강화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'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

□ 또한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8조(위원의 신분보장)의 경우에도 "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"라고 된 부분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"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"로 개정('16.2.3)한 바 있습니다.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(위원의 위촉 해제)는 "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"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위원 위촉 해제 이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.

**〈국가인권위원회법〉**

제8조(위원의 신분보장)
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. 다만, 위원이 **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**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.

**〈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〉**

제8조의2(위원회 해촉 해제)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
1. 생략
2. **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**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**이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에게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18조 및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의 위원 위촉 해제 사유 등을 참고하여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포함한 모든 서울특별시 조례의 개정을 권고합니다.**

참고자료 :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해촉 사유 조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조례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유엔 장애인권리협약
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
국가인권위원회법
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

**2018년 10월 31 일**

**서 울 특 별 시 인 권 위 원 회**

〔참고자료2〕

# 「제로페이 Biz」 시행계획

「제로페이Biz」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회계절차 및 제로페이 규정을 고려한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 Ⅰ 「제로페이 Biz」 개요

○ **목 적**

- 서울시·자치구·투자출연기관 및 민간단체의 지출에 제로페이 적용

○ **사용기관 : 시, 자치구, 투자출연기관, 보조금 받는 민간단체 등**

○ **운영개요**

- 사전회계절차 이행을 규정하고 있는 현 지방회계법을 준수하여 1영업일내 회계처리 후 2영업일에 입금
- 민간단체의 경우 결제 즉시 출금 및 2영업일에 입금

○ **서비스 개시일 : '19.4.15(월)** ※ 시범운영 '19.4월 초

○ **시스템 구축기관 : 3개 기관**(신한은행, 우리은행, 국민은행)

## Ⅱ 쟁점 사항

○ **「제로페이Biz」가 금융결제원을 통한 가맹점 통보, 집계·정산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제로페이 플랫폼 사용 필요(중소벤처기업부 승인사항)**

○ **중소벤처기업부는 「제로페이Biz」가 결제와 동시(당일)에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금융위원회 의견에 따라 제로페이 플랫폼 사용승인 불가 입장**

◈ **전자금융거래법 제2조(정의)** 13. **"직불전자지급수단"이라 함은**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**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**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**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**를 말한다.

○ **이를 해결하기 위한 '19.3.19. BH 조정회의시**

- 금융위원회는 「제로페이Biz」가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결제일(당일) 24시까지 출금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우리시 익일 처리방안에 대해 불가입장 고수
- 행정안전부에서 사전품의없이 지출이 가능하도록 지방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결정(시행령 개정까지는 약 4개월 소요)

➡**「제로페이 Biz」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고,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제로페이 정책**(모바일앱을 통한 신규가맹, POS와 연계한 편의점 서비스 개시, 참여결제사 마케팅 활동 등)**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전이라도 제로페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**

## Ⅲ 추진 방안 : 단계별 추진

☐ **1단계로 지방회계법시행령 개정시까지는 사용 당일 품의를 거쳐 당일 24시까지 지출 처리토록 「제로페이Biz」를 운영하여 금융위원회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적용기준 및 행안부 지방회계법의 기준 모두 준수**

☐ **2단계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회계법시행령 개정시에는 사용결제 즉시 출금하는 방식으로 「제로페이Biz」 본격 시행**

## Ⅳ 세부추진계획

☐ **1단계 : '19.4.15 ~** ※ 시범운영 '19.4월 초

○ **적용대상 : 업무추진비(시책·기관운영)**

○ **추진내용 : 제로페이 결제 당일 근무시간내 회계절차 이행 및 당일 출금**

- 「제로페이 Biz」는 오후 1시 30분까지 사용
- 회계절차 이행 및 지급명령은 17시 00분까지 완료

☐ **2단계 : 지방회계법시행령 개정 이후**

○ **적용대상 : 업무추진비 + 사무관리비(사무용품구입비 등)**

○ **추진내용 : 「제로페이Biz」 결제 즉시 출금**

※ 지방회계법시행령 개정시 회계처리절차 별도 안내